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5194811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영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김진, 전다운

변론 종결 2020. 11. 24

판결 선고 2020. 1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에 대하여 각 2/10지분에 대하여각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D, E병원 F호에서 '혈구탐식 림프 조직구증'(혈액종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1. 14. 법무법인(유한) 'CT의 공증인 변호사 H와 증인 I, J, 유언집행자 피고가 각 참석한 가운데 망인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에 대하여 각 7/10지분은 피고에게, 각 3/10지분은 원고에게 유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언공정증세법무법인(유)G, 증서 2019년 제7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25.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을 간접사인으로, '다발성 기관 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고,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번 부동산 중 7/1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9. 3. 26. 접수 제11154호 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2번 부동산 중 7/10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9. 3. 26. 접수 제11155호로, 각 2019. 1.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6호증, 을 제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L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 의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9. 1. 14. 산소포화도(Saturation)가 3-94%에 이르러 호흡이 곤란해져서 동맥혈가스검사(ABGA1))와 네불라이저(Nebulizer)12)를 사용하여 기도에 약제를 투여받

고,엘튜브(L-tube)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체내에 상당히 비정상적인 산소부족 상태에 있었으므로,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의사능력과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의사능력이 없는 망인에 의하여 작성되었고,민법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며,무효인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등기도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과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갑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L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축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망인이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과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능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정권

별지

1)arterial blood gas analysis의 으두4.2) 약물을 에오로솔로 만드는 기구.